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33호

2021.11.22.(월)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456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입법예고]

제2021-2889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456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0호까지 및 제12호”를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13. 서울안심소득 지원대상자. 이 경우, “서울안심소득 지원대상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하 “서울안심소득”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2조제1항제13호의 지원대상자: 제1항제15호의 서울안심소득

별표의 표 중 제14호란 아래에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서울안심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긴급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서울안심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생활안정지원 대상으로 서울안심소득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안심소득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함(제2조, 제3조 및 별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889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은 다인가구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어 1인가구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가 전면개정됨에 따라 1인가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에서 위임한 지원사업의 적용대상 및 자치구 센터 지원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제2조)

나.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특별대책1반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전화: 2133-6153, FAX: 2133-0813, E-mail: barrister@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